

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

제출 변경사항 안내 및 정관 등 변경신고 안내



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사항 안내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개정(2026.6.9. 시행)에 따른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폐지 안내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17조(보고 등)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,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**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**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.

변경 사항 기존 연 2회(매년 4월, 10월) → **변경 연 1회(매년 4월)**

다음 사업보고서 제출시기 **2027년 4월**(4월 1일(목) ~ 4월 30일(금))

제출 대상 2007년 인증 기업 ~ 2026년 12월 말(4차) 인증 기업

참고 사항 제출 마감일('27년 4월말)이전에 인증 취소 및 반납 처리가 완료된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없음

사업보고서 작성법 온라인 교육 수강 안내(edu.seis.or.kr)



사회적기업 교육 플랫폼
(소셜클래스 접속,
edu.seis.or.kr)



사회적기업 포털과
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



검색창에
“사업보고서” 검색



강의실 내 오른쪽 상단
“학습하기” 클릭



마이클래스 - 학습현황 -
해당 과정의
“강의실 입장” 클릭



“(예비) 사회적기업
사업보고서의 이해와 온라인
작성 방법” 수강신청

사회적기업 정관 등 변경신고 안내

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정관 등을 변경할 때, **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**가 발생해요!

신고 대상 정관 등을 변경한 인증 사회적기업

신고 방법 온라인(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-로그인-마이페이지)

나의 기업정보

인증·지정 정보

정관변경 신청



유의 사항

정관 등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
변경 **신고*** 미이행 시, **과태료가 발생****할 수
있으니 변경일 고려하여 신고부터 하세요!

* 기업이 시스템상 변경 신고를 완료한 기준임

** 지점 설립 및 폐업 신고는 과태료 대상이 아님

법인의 종류에 따라
변경일의 **기산점**과 **제출 서류**가
다르니 유의하세요!



법인의 종류

상법상 회사 · 합자조합 및
비영리민간단체, 협동조합, 사업단 등

민법상 사단 · 재단법인, 소비자생활협동조합,
사회적협동조합, 사회복지법인, 공인법인 등

변경일의 기산점

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
정관을 변경한 날

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
정관변경을 허가(인가)받은 날

제출 서류

• 이사회, 총회 등 회의록

• 신규대조표(정관 개정사항 표기)

• 변경된 정관

• 변경된 정관
•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(인가)서

문의처

사회적기업의 사후관리(사업보고서, 정관 등 변경신고 처리) 안내 ☎ 1551-2024

시스템 관련 문의 ☎ 1661-4006

※ 정관 변경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

공지사항
바로가기

